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057
----------	------

2020년 5월 4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송명화 의원 외 20명

나. 발 의 일 : 2020년 11월 6일

다. 회 부 일 : 2021년 1월 21일

라. 상 정 일 : 제29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21년 2월 25일 상정·심사보류

제30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21년 4월 27일 상정·의결(수정안 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송명화 의원)

가. 제안이유

- 기후위기 및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 시 금고 선정기준에 탈석탄 투자 실천여부를 반영하여 공공 및 금융부문의 사회책임 투자를 촉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금고지정 평가기준으로 별표로 정하는 그 밖의 사항을 추가함(안 제7조제2항제6호 신설).
- 2) 시와의 협력사업계획의 배점을 4점에서 2점으로 줄이고, 그 밖의 사항으로 탈석탄 투자 선언 여부 및 이행실적을 추가하여 2점을 배정함(안 별표 1).
- 3) 탈석탄 투자 선언 여부 및 이행실적의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을 규정함(안 별표 2 Ⅱ 제6항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회계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입법예고(2021. 1. 26. ~ 2. 2.) 결과 : 의견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 본 개정조례안은 기후변화 위기 대응 방안의 일환으로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 확대를 촉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고지정 평가항목에 ‘탈석탄 투자 선언 여부 및 이행실적’을 반영하려는 것임.

가. 조례 개정 배경 및 필요성

- 「지방회계법」 등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현금,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4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 또는 규칙으로 약정기간을 정하여 금고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방회계법」

제38조(금고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현금과 그가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금고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정, 변경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공고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④ 금고의 지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8조(금고 업무의 약정)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금고 업무의 취급능력
2. 주민의 이용 편의
3. 금융기관의 재무구조

②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총액이 2천500억원 이상일 것
2. 자본총액이 250억원 이상일 것
3. 자산총액에서 자본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일 것
4. 법인세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 3년 연속 흑자일 것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과 금고 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④ 금고는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서 정하는 금고로서의 의무와 제3항에 따른 약정사항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⑤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3항에 따라 약정한 금고 업무 약정기간
 2. 금고의 자기자본비율 등 경영지표
 3. 금고 업무 약정기간 전에 금고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고 지정의 세부기준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1. 총칙

[5] 금고의 약정기간

-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 이내에서 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함.
- 금고의 약정기간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함.

3. 금고지정 평가기준

[1] 경쟁쟁방법에 의하여 지정할 경우 평가기준

-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 표>의 기준으로 평가함
 - 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5)
 - 나.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7)
 - 다. 지역주민이용 편의성(18)
 - 라. 금고업무 관리능력(22)
 - 마.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7)
 - 바. 기타사항 -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11)

< 서울특별시 금고 운영현황 >

약정기간	금고은행	회 계	출연금	지정방법
'15.1.1~'18.12.31	우리은행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1,400억원	공개경쟁
'19.1.1~'22.12.31	신한은행	일반회계, 특별회계 ('21년 41.8조원(일반 28조, 특별 12조))	3,015억원	공개경쟁
	우리은행	기금 ('21년 기금 1.8조원)	1,100억원	

○ 한편, 정부에서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2020.7. 관계부처 합동)을 수립 하면서, 석탄발전 축소 등 탄소중립(Net-zero)을 향한 경제·사회의 녹색 전환을 지향하는 그린 뉴딜 정책을 제시하였고,

< 한국판 뉴딜의 구조 >



- 서울시에서는 ‘그린뉴딜 추진을 통한 2050 온실가스 감축전략’(2020.7. 행정1부시장 방침 제183호)을 수립하여 부문별 추진계획으로 시금고 선정 기준에 탈석탄 등 친환경 사회책임투자 가치 반영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계획을 발표한바 있음.
- 또한, 금고 지정 고려사항에 탈석탄 선언과 석탄 금융투자여부를 추가하려는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상정(2020.9.10.)되어 소위원회에 회부(2020. 9.21.)되어 논의되고 있는 등,
 -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금고 지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탈석탄 투자 실천 여부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공적자금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 수행을 유도하려는 취지로 보여짐.

나. 조문별 세부내용 검토

1) 금고지정 평가항목 추가 (안 제7조제2항제6호 신설)

- 안 제7조제2항제6호 신설은 공개경쟁 또는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경우 현행 평가항목 외에 금고의 지정에 고려해야 할 사항을 별표에 추가 규정(별표 1)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금고지정 평가기준) ① (생략)	제7조(금고지정 평가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6조 단서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적격 여부를 평가한다.	② ----- ----- ----- -----.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1. -----

현 행	개 정 안
재무구조의 안정성	-----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2. -----
3. 시민의 이용 편의성	3. -----
4. 금고업무 관리능력	4. -----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 사업	5. -----
<신 설>	6. 그 밖에 금고의 지정에 필요하여 별표 1로 정하는 사항

2) 평가항목 신설 및 평가세부항목 배점 기준 조정 (별표 1)

○ 안 별표 1의 제5호 나목은 금고지정 평가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의 평가 세부항목인 ‘시와의 협력사업계획’(나목)의 배점기준을 현행 4점에서 2점으로 하향하려는 것으로,

-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은행 선정 과정에서 협력사업비 과다출연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금융권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하 “예규”)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본 개정안과 같이 조례가 개정될 경우 향후 출연금 세입의 감소가 예견되는바, 이에 대한 재무국의 대응 방안 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현 서울시 금고(2019.1.1.~2022.12.31.(4년)) 출연금 규모 : 4,115억원(1금고 3,015억원, 2금고 1,100억원)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시행 2019. 5. 9.] [행정안전부예규 제71호, 2019. 5.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개정 이유

- 최근 지자체 금고은행 선정 과정에서 협력사업비 과다출연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자치단체·금융권 등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안 마련

◇ 주요내용

가. 협력사업비 평가는 유지하되, 과당경쟁 제한

- 협력사업비 배점을 축소(4→2점)하고, 객관적 지표인 금리 분야 경쟁으로 유인 (금리 배점 확대, 15→17점)
- 협력사업비 과다 출연 시 지자체가 행안부에 보고하도록 하여 감독기관에 의한 보고·감독체계 마련

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기관의 역할 확대

- 금융위의 지역재투자 평가제도* 도입에 따라 그 평가결과를 지자체 자율로 금고 선정에 반영 가능
- * 금융기관의 지역 내 중소기업·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등에 대하여 평가
- ‘지점 수’에 대한 평가를 개선하여 지역금융 인프라 항목에 대한 평가 강화
- 경영건전성은 양호하나 자산규모가 작은 중소기업 은행을 고려하여 신용평가 방법 개선

다. 금고선정 과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 금고선정 평가결과 공개 시 금고 입찰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까지 공개
- ‘20년부터 금고선정 시 지자체 자율적으로 주민의견 수렴결과 반영 가능

○ 안 별표 1의 제6호가목은 평가항목(6. 그 밖에 사항) 및 평가 세부항목 (가목)을 신설하여 ‘탈석탄 투자 선언 여부 및 이행실적’에 배점기준 2점을 부여하려는 것으로,

-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공적자금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 수행을 유도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다만, 재무국에서는 본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금융기관의 친환경 금융정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협의의 ‘탈석탄’보다는 광의의 ‘녹색 금융’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세부내용으로 탈석탄 및 재생에너지 이행 실적 등을 넣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의원발의 조례안 검토의견 제출(재무과-9069(2021.2.23.))

- 금융기관의 기후변화 위기 대응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탈석탄 투자 실천 여부를 반영하여 시금고 평가기준을 마련한 본 조례 개정안의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나,
 - 금융기관이 친환경 경영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탈석탄’보다는 다양한 친환경 요소를 포함시키는 포괄적인 개념인 ‘녹색금융’으로 변경하고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으로 ‘탈석탄’을 넣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안 별표1 제6호란 가목 “탈석탄 투자 선언 여부 및 이행실적”을 “녹색금융 이행실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 ‘탈석탄 선언 및 이행실적’ 외에도 글로벌 스탠더드 대응이라는 금융기관의 자발적인 노력을 포함시킴으로써, 금융기관들의 자발적인 선언 및 활동들을 장려·촉진하여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금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 안 별표2 II 제6호 가목에 “금융기관이 탈석탄 투자 선언을 하였는지와 그 이행 실적”을 “금융기관이 탈석탄 투자 선언을 하였는지와 그 이행 실적 , 국제 녹색금융 이니셔티브 가입 여부”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안 별표2 I 제2호 단서 중 “평가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을 “평가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평가항목 6(그 밖의 사항)”으로 한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 현재 기준에는 평가항목 2, 평가항목 5에만 순위간 점수편차를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안 별표2 II 제6호 가목의 별표 ‘모든 금융기관이 탈석탄 투자 선언을 하고 완전히 이행한 경우 모두 만점처리 가능’ 조항에 대해서는, 일괄 만점 처리가 가능하여 이 조항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아울러, '19년 개정된 행안부「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평가항목과 전반적인 배점기준을 함께 조정하는 것이 필요함.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3. 금고지정 평가기준 중

○ <별표>의 기준 중 항목 6(기타사항)은 다음과 같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음.

가. 항목 6에 자치단체 실정에 맞도록 세부항목을 정할 수 있음.

나. 항목 6을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목 6의 배점(11점)을 항목 1, 2, 3, 4에 세부항목을 추가하여 배분하거나 또는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 있음.

- 다만, 항목 2(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에는 세부항목 추가는 가능하나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는 없음.

- 항목 5(지역사회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에는 세부항목을 추가하거나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 없으며, 또한 항목 5와 유사한 세부항목을 다른 항목에 추가할 수 없음.

※ 다만, 항목6을 활용하여 금융위의 지역재투자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음.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u>금고지정 평가항목 및</u> <u>배점기준(제7조제1항 관련)</u>			[별표 1] <u>금고지정 평가항목 및</u> <u>배점기준(제7조제1항 관련)</u>		
평가항목	평가 세부항목	배점	평가항목	평가 세부항목	배점
계		100	계		100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u>9</u>			<u>7</u>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나. 시와의 협력사업계획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시와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	(5) (4)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나. 시와의 협력사업계획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시와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	(5) (2)
<신 설>			6. 그 밖의 사항		<u>2</u>
			가. 탈석탄 투자 선언 여부 및 이행실적		(2)

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의 순위 및 등급 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 항목에서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해야 한다.

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평가 항목 6(그 밖의 사항)-----

-----.

- 다만, 예규에서는 항목 2(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와 항목 5(지역 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에만 순위간 점수편차를 다른 평가 세부 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본 개정안이 상위 예규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3. 금고지정 평가기준 중

- <별표>에 대한 각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다음의 원칙을 준수하여 조례(규칙)으로 정하여야 함.
- 가.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음.
- 나.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함.
- 다만, 항목 2(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는 순위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함.

- 별표 2의 ‘세부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에 대한 개정안(별표 2 II 제 5호 개정 및 제6호 신설)은 앞에서 본 별표 1 개정안*에 대한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을 규정하려는 것임.

* 평가항목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의 평가 세부항목 중 ‘시와의 협력사업계획’(나목)의 배점기준을 현행 4점에서 2점으로 하향 평가항목(6. 그 밖에 사항) 및 평가 세부항목(가목)을 신설하여 ‘탈석탄 투자 선언 여부 및 이행실적’에 배점기준 2점을 부여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별표 2]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제7조제1항 관련)</p> <p>II.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p> <p>1. ~ 4. (생략)</p> <p>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9점)</p> <p>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5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 및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p>나. 시와의 협력사업계획 (4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연금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p>※ II-3, 4의 지방세에는 세외수입을 포함</p> <p><신설></p>	<p>[별표 2]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제7조제1항 관련)</p> <p>II. (현행과 같음)</p> <p>1. ~ 4. (현행과 같음)</p> <p>5. ----- (7점)</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 (2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과 같음) <p>※ (현행과 같음)</p> <p>6. <u>그 밖의 사항 (2점)</u></p> <p>가. <u>탈석탄 투자 선언 여부 및 이행 실적 (2점)</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금융기관이 탈석탄 투자 선언을 하였는지와 그 이행 실적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u> <p>※ <u>모든 금융기관이 탈석탄 투자 선언을 하고 완전히 이행한 경우 모두 만점처리</u></p>

다. 종합의견

- 「지방회계법 시행령」(제48조제6항)에 따라 금고 지정의 세부기준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 관련 예규(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개정(2019.5.9.)으로 현행 조례는 예규상 배점에 배치되는 상황임.
- 본 개정조례안 배점기준을 살펴보면, 예규의 최저 배점기준에 미달하는 평가 세부항목이 6개에 달하고, 지나치게 예규 기준을 초과하여 배분된 세부항목도 다수 보이는바, 각 평가 세부항목별 배점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비교표 >

평가 항목	평가 세부(세세부)항목	예규(A)	현행 조례	개정안(B)	차이 (B-A)
합 계		100	100	100	11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5	30	30	5
	가.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8	10	10	2
	- 국외평가기관	4	6	6	2
	- 국내평가기관	4	4	4	0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17	20	20	3
	- 총자본비율(안정성)	6	7	7	1
	- 고정이하여신비율(건전성)	6	7	7	1
	- 자기자본이익률(수익성)	5	6	6	1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17	18	18	1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7	6	6	-1
	나. 공공예금 적용금리	6	5	5	-1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4	4	4	0
	라. 정기예금 만기경과시 적용금리*	0	3	3	3
3.	시민의 이용 편의성	18	18	18	0
	가. 관내 지점 수 및 지역주민 이용 편리성	7	5	5	-2
	나.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능력	5	6	6	1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 방안	6	7	7	1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2	25	25	3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 관리능력	6	5	5	-1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8	7	7	-1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 처리능력	8	7	7	-1

	라. 수납시스템(OCR센터, ETAX 등) 구축·운영능력 및 계획*	0	6	6	6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7	9	7	0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5	5	5	0
	나. 자치단체 협력사업계획	2	4	2	0
6. 그 밖의 사항(개정안)*		11	0	2	2
	가. 탈석탄투자 선언 여부 및 이행실적(개정안)			2	2

* 예규 외 서울시 조례로 추가(안)한 평가(세부)항목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3. 금고지정 평가기준 중 항목 6(기타사항) 관련

○ <별표>의 기준 중 **항목 6(기타사항)**은 다음과 같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음.

가. 항목 6에 자치단체 실정에 맞도록 세부항목을 정할 수 있음.

나. **항목 6을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목 6의 배점(11점)을 항목 1, 2, 3, 4에 세부항목을 추가하여 배분하거나 또는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 있음.**

- 다만, 항목 2(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에는 세부항목 추가는 가능하나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는 없음.

- 항목 5(지역사회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에는 세부항목을 추가하거나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 없으며, 또한 항목 5와 유사한 세부항목을 다른 항목에 추가할 수 없음.

※ 다만, 항목6을 활용하여 금융위의 지역재투자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음.

○ 종합해 보면, 예규의 배점기준과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본 조례안 별표 1의 배점기준 수정 필요 여부, 별표 2 일반원칙 개정안이 예규 규정에 합당한지 여부, 평가항목명에 대한 재무국 의견(탈석탄→녹색금융) 반영 여부, 신설 평가세부항목(탈석탄투자 선언 여부 및 이행실적)의 적정 항목 변경 필요 여부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 재무국에서 추진 중인 자문회의 결과 등을 반영한 최종 세부 추진 계획이 도출된 후에 항목별 배점기준 등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를 거친 후 본 개정안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의 배점 및 평가 기준에 맞도록 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규정에 따라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과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에 대한 사항을 수정함(안 별표 1, 별표2).

8. 심 사 결 과 : 수정안 가결(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 련 2057
----------	-------------

제안연월일 : 2021년 4월 27일
제 안 자 : 행정자치위원장

1. 수정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의 배점 및 평가 기준에 맞도록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규정에 따라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과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에 대한 사항을 수정함(안 [별 표 1], [별 표 2]).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별표 1]과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수정한다.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제7조제1항 관련)

I. 일반원칙

1. 평가 세부항목별 점수 부여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차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대상 금융기관을 등급별로 나누어 점수를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평가 세부항목별(1- 가,나,의 경우는 평가 세세부 항목별)로 대상 금융기관이 부여받는 최소 점수는 배점상한의 60% 이상으로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 및 등급 간 점수편차는 배점상한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로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항목 2(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와 평가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의 순위 및 등급 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서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해야 한다.

II.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5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8점)

- 평가기준 :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기관 조사자료의 등급기준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
※ 단, 지역조합은 국내 신용조사 기관 조사자료의 등급기준에 따라 평가 가능

◦ 평가방법

-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평가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의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17점)

-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의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확인

◦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 총자본비율 (안정성,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 (안정성 6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6점)

- 자기자본이익률 (수익성, 5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20점)

가. 정기에금 예치금리 (7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에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6점)

- 보통예금 및 MMDA 운용 금리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

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4점)

-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라. 정기예금 만기경과시 적용금리 (3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만기경과 후 적용하는 기간별 금리수준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3. 시민의 이용 편의성 (18점)

가. 관내 지점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 (7점)

- 시민의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관내 영업점 수, 관내 무인점포 및 관내 ATM 설치 수를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 ※ 단,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관내 지점 수”에서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능력 (5점)

- 최근 수년간 지방세 수납실적 및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지방세입금 납부 편의 증진 방안 (6점)

-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 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 편의(전자납부 등) 증진 방안, 파업 등 사고 등을 대비한 운영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8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 관리능력 (6점)

- 지방세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8점)

-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금고취급 경험 및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8점)

- 전산보안시스템(H/W, S/W)의 도입 및 운영 방안 등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라. 수납시스템(OCR센터, ETAX 등) 구축·운영능력 및 계획 (6점)

- OCR센터, ETAX 등 수납시스템 구축·운영능력 및 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7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5점)

-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 및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시와의 협력사업계획 (2점)

- 출연금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6. 그 밖에 사항 (2점)

가. 녹색금융 이행실적 (2점)

- 금융기관이 탈석탄 선언을 하였는지와 그 이행 실적, 국제 녹색금융 이니셔티브 가입 여부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 II-3, 4의 지방세에는 세외수입을 포함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조문 대비표

【별 표 1】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7조제1항 관련)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평가항목	평가 세부항목	배점	평가항목	평가 세부항목	배점	평가항목	평가 세부항목	배점
계		100	계		100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30			30			25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6점) - 국내평가기관(4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 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10점)을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안정성, 7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7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7점) - 자기자본이익률 (수익성, 6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 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업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 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자치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10)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6점) - 국내평가기관(4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 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10점)을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안정성, 7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7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7점) - 자기자본이익률 (수익성, 6점)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10)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4점) - 국내평가기관(4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 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안정성,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6점) - 자기자본이익률 (수익성, 5점) ※ <개정안과 같음>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 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8)	(17)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18			18			20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라. 정기예금 만기경과시 적용금리	(6) (5) (4) (3)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라. 정기예금 만기경과시 적용금리	(6) (5) (4) (3)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라. 정기예금 만기경과시 적용금리	(7) (6) (4) (3)		

현행		개정안		수정안		
3. 시민의 이용 편의성	가. 관내 지점 수 및 지역주민 이용 편리성	18 (5)	가. 관내 지점 수 및 지역주민 이용 편리성	18 (5)	가. 관내 지점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	18 (7)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능력 (6) 다. 지방세입금 납부 편의 증진 방안 (7)		※ <현행과 같음> 나.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능력 (6) 다. 지방세입금 납부 편의 증진 방안 (7)		※ <개정안과 같음>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5)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6)	
4. 금고업무 관리능력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 관리능력	25 (5)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 관리능력	25 (5)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능력	28 (6)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7)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7)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라. 수납시스템(OCR센터, ETAX 등) 구축·운영능력 및 계획 (6)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7)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7) ※ <현행과 같음> 라. 수납시스템(OCR센터, ETAX 등) 구축·운영능력 및 계획 (6)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8)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8) ※ <개정안과 같음> 라. 수납시스템(OCR센터, ETAX 등) 구축·운영능력 및 계획 (6)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9 (5)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7 (5)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7 (5)
	나. 시와의 협력사업계획 (4)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만으로만 평가, “시와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		나. 시와의 협력사업계획 (2) ※ <현행과 같음>		나. 시와의 협력사업계획 (2) ※ <개정안과 같음>	
	<신 설>		6. 기타 사항	2 (2)	6. 그 밖에 사항	2 (2)
			가. 탈석단 투자 선언 여부 및 이행실적		가. 녹색금융 이행실적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 처리 가능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p>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18점)</p> <p>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6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략) <p>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5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략) <p>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4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략) <p>라. 정기예금 만기경과시 적용금리 (3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략) 	<p>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18점)</p> <p>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6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과 같음) <p>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5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과 같음) <p>다. (현행과 같음)</p> <p>라. (현행과 같음)</p>	<p>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20점)</p> <p>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7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안과 같음) <p>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6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안과 같음) <p>다. (개정안과 같음)</p> <p>라. (개정안과 같음)</p>
<p>3. 시민의 이용 편의성 (18점)</p> <p>가. 관내 지점 수 및 지역주민 이용 편리성 (5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의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전국영업점망 및 시내 영업점 분포도 기준으로 비교·평가하되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p>※ 단,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관내 지점 수”에서 제외</p> <p>나.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능력 (6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략) <p>다. 지방세입금 납부 편의 증진 방안 (7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략) 	<p>3. 시민의 이용 편의성 (18점)</p> <p>가. 관내 지점 수 및 지역주민 이용 편리성 (5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의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전국영업점망 및 시내 영업점 분포도 기준으로 비교·평가하되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p>※ (현행과 같음)</p> <p>나.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능력 (6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과 같음) <p>다. 지방세입금 납부 편의 증진 방안 (7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과 같음) 	<p>3. 시민의 이용 편의성 (18점)</p> <p>가. 관내 지점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 (7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의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관내 영업점 수, 관내 무인점포 및 관내 ATM 설치 수를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p>※ (개정안과 같음)</p> <p>나.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능력 (5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안과 같음) <p>다. 지방세입금 납부 편의 증진 방안 (6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안과 같음)
<p>4. 금고업무 관리능력 (25점)</p> <p>가. 세입세출업무 자금 관리능력 (5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략) <p>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7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략) <p>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7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략) <p>라. 수납시스템(OCR센터, ETAX 등) 구축운영능력 및 계획 (6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략) 	<p>4. 금고업무 관리능력 (25점)</p> <p>가. 세입세출업무 자금 관리능력 (5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과 같음) <p>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7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과 같음) <p>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7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과 같음) <p>라. (현행과 같음)</p>	<p>4. 금고업무 관리능력 (28점)</p> <p>가. 세입세출업무 자금 관리능력 (6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안과 같음) <p>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8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안과 같음) <p>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8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안과 같음) <p>라. (개정안과 같음)</p>

<p>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9점)</p> <p>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5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략) <p>나. 시와의 협력사업계획 (4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연금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p>※ II-3, 4의 지방세에는 세외수입을 포함</p>	<p>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7점)</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시와의 협력사업계획 (2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연금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p>※ II-3, 4의 지방세에는 세외수입을 포함</p>	<p>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7점)</p> <p>가. <개정안과 같음></p> <p>나. 시와의 협력사업계획 (2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연금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p><삭제></p>
<p><신설></p>	<p>6. 기타 사항 (2점)</p> <p>가. 탈석탄 투자 선언 여부 및 이행실적 (2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기관이 탈석탄 투자 선언을 하였는지와 그 이행 실적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p>※ 모든 금융기관이 탈석탄 투자 선언을 하고 완전히 이행한 경우 모두 만점처리</p>	<p>6. 그 밖에 사항 (2점)</p> <p>가. 녹색금융 이행실적 (2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기관이 탈석탄 선언을 하였는지와 그 이행 실적, 국제 녹색금융 이니셔티브 가입 여부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p>※ II-3, 4의 지방세에는 세외수입을 포함</p>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그 밖에 금고의 지정에 필요하여 별표 1로 정하는 사항

[별표 1]과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제7조제1항 관련)

I. 일반원칙

1. 평가 세부항목별 점수 부여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차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대상 금융기관을 등급별로 나누어 점수를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평가 세부항목별(1- 가,나,의 경우는 평가 세세부 항목별)로 대상 금융기관이 부여받는 최소 점수는 배점상한의 60% 이상으로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 및 등급 간 점수편차는 배점상한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로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항목 2(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와 평가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의 순위 및 등급 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서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해야 한다.

II.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5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8점)

- 평가기준 :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기관 조사자료의 등급기준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
※ 단, 지역조합은 국내 신용조사 기관 조사자료의 등급기준에 따라 평가 가능
- 평가방법
 -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평가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의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17점)

-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의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확인
-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 총자본비율 (안정성,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 (안정성 6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6점)
 - 자기자본이익률 (수익성, 5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20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7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6점)

- 보통예금 및 MMDA 운용 금리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4점)

-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

위에 따라 점수 부여

라. 정기예금 만기경과시 적용금리 (3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만기경과 후 적용하는 기간별 금리수준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3. 시민의 이용 편의성 (18점)

가. 관내 지점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 (7점)

- 시민의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관내 영업점 수, 관내 무인점포 및 관내 ATM 설치 수를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 ※ 단,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관내 지점 수”에서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능력 (5점)

- 최근 수년간 지방세 수납실적 및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지방세입금 납부 편의 증진 방안 (6점)

-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 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 편의(전자납부 등) 증진 방안, 파업 등 사고 등을 대비한 운영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8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 관리능력 (6점)

- 지방세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8점)

-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금고취급 경험 및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8점)

- 전산보안시스템(H/W, S/W)의 도입 및 운영 방안 등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라. 수납시스템(OCR센터, ETAX 등) 구축·운영능력 및 계획 (6점)

- OCR센터, ETAX 등 수납시스템 구축·운영능력 및 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7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5점)

-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 및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시와의 협력사업계획 (2점)

- 출연금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6. 그 밖에 사항 (2점)

가. 녹색금융 이행실적 (2점)

- 금융기관이 탈석탄 선언을 하였는지와 그 이행 실적, 국제 녹색금융 이니셔티브 가입 여부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 II-3, 4의 지방세에는 세외수입을 포함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7조(금고지정 평가기준) ① (생략)</p> <p>② 제6조 단서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적격 여부를 평가한다.</p> <p>1. ~ 5. (생략)</p> <p><u><신설></u></p>	<p>제7조(금고지정 평가기준)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p> <p>1. ~ 5. (현행과 같음)</p> <p><u>6. 그 밖에 금고의 지정에 필요하여 별표 1로 정하는 사항</u></p>																																								
<p>[별표 1]</p> <p style="text-align: center;"><u>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7조제1항 관련)</u></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30%;">평가항목</th> <th style="width: 50%;">평가 세부항목</th> <th style="width: 20%;">배점</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계</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td> </tr> <tr> <td rowspan="2" style="vertical-align: top;">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td> <td style="padding-left: 20px;">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6점) - 국내평가기관(4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 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10점)을 평가</td>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bottom;">(10)</td> </tr> <tr> <td style="padding-left: 20px;">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안정성, 7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7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건전성, 7점) - 자기자본이익률(수익성, 6점) ※ (생략) ※ 금융감독원, 행정자치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td>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bottom;">(20)</td> </tr> <tr> <td rowspan="4" style="vertical-align: top;">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td> <td style="padding-left: 20px;">가. 정기예금 예치금리</td> <td style="text-align: center;">(6)</td> </tr> <tr> <td style="padding-left: 20px;">나. 공금예금 적용금리</td> <td style="text-align: center;">(5)</td> </tr> <tr> <td style="padding-left: 20px;">다. 자치단체 대출금리</td> <td style="text-align: center;">(4)</td> </tr> <tr> <td style="padding-left: 20px;">라. 정기예금 만기경과시 적용금리</td> <td style="text-align: center;">(3)</td> </tr> </tbody> </table>	평가항목	평가 세부항목	배점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6점) - 국내평가기관(4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 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10점)을 평가	(10)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안정성, 7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7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건전성, 7점) - 자기자본이익률(수익성, 6점) ※ (생략) ※ 금융감독원, 행정자치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20)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6)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5)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4)	라. 정기예금 만기경과시 적용금리	(3)	<p>[별표 1]</p> <p style="text-align: center;"><u>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7조제1항 관련)</u></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30%;">평가항목</th> <th style="width: 50%;">평가 세부항목</th> <th style="width: 20%;">배점</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계</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td> </tr> <tr> <td rowspan="2" style="vertical-align: top;">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td> <td style="padding-left: 20px;">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4점) - 국내평가기관(4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 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td>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bottom;">(8)</td> </tr> <tr> <td style="padding-left: 20px;">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안정성,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건전성, 6점) - 자기자본이익률(수익성, 5점) ※ (현행과 같음)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 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td>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bottom;">(17)</td> </tr> <tr> <td rowspan="4" style="vertical-align: top;">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td> <td style="padding-left: 20px;">가. 정기예금 예치금리</td> <td style="text-align: center;">(7)</td> </tr> <tr> <td style="padding-left: 20px;">나. 공금예금 적용금리</td> <td style="text-align: center;">(6)</td> </tr> <tr> <td style="padding-left: 20px;">다. 자치단체 대출금리</td> <td style="text-align: center;">(4)</td> </tr> <tr> <td style="padding-left: 20px;">라. 정기예금 만기경과시 적용금리</td> <td style="text-align: center;">(3)</td> </tr> </tbody> </table>	평가항목	평가 세부항목	배점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4점) - 국내평가기관(4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 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8)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안정성,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건전성, 6점) - 자기자본이익률(수익성, 5점) ※ (현행과 같음)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 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17)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7)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6)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4)	라. 정기예금 만기경과시 적용금리	(3)
평가항목	평가 세부항목	배점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6점) - 국내평가기관(4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 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10점)을 평가	(10)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안정성, 7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7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건전성, 7점) - 자기자본이익률(수익성, 6점) ※ (생략) ※ 금융감독원, 행정자치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20)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6)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5)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4)																																							
	라. 정기예금 만기경과시 적용금리	(3)																																							
평가항목	평가 세부항목	배점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4점) - 국내평가기관(4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 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8)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안정성,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건전성, 6점) - 자기자본이익률(수익성, 5점) ※ (현행과 같음)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 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17)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7)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6)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4)																																							
	라. 정기예금 만기경과시 적용금리	(3)																																							

3. 시민의 이용 편의성	가. 관내 지점 수 및 지역주민 이용 편리성 ※ (생략)	18 (5)
	나.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 편의 증진 방안	(6) (7)
		25
4. 금고업무 관리능력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 관리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 (생략)	(5) (7) (7)
	라. 수납시스템(OCR센터, ETAX 등) 구축·운영능력 및 계획	(6)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나. 시와의 협력사업계획 ※ (생략)	9 (5) (4)
<신 설>		

3. 시민의 이용 편의성	가. 관내 지점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 ※ (현행과 같음)	18 (7)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5) (6)
		28
4. 금고업무 관리능력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 (현행과 같음)	(6) (8) (8)
	라. 수납시스템(OCR센터, ETAX 등) 구축·운영능력 및 계획	(6)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나. 시와의 협력사업계획 ※ (현행과 같음)	7 (5) (2)
6. 그 밖에 사항	가. 녹색금융 이행실적	2 (2)

[별표 2]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제7조제1항 관련)

I. 일반원칙
II.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30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10점) ○ (생략) ○ (생략)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20점) ○ (생략) ○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 총자본비율 (안정성, 7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7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7점) - 자기자본이익률 (수익성, 6점) ※ (생략) ※ 금융감독원, 행정자치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18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6점) ○ (생략)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5점) ○ (생략)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4점) ○ (생략) 라. 정기예금 만기경과시 적용금리 (3점) ○ (생략)
3. 시민의 이용 편의성 (18점) 가. 관내 지점 수 및 지역주민 이용 편리성 (5점) ○ 시민의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전국 영업점망 및 시내 영업점 분포도 기준으로 비교평가하되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별표 2]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제7조제1항 관련)

I. 일반원칙 (현행과 같음)
II.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5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8점)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17점) ○ (현행과 같음) ○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 총자본비율 (안정성,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6점) - 자기자본이익률 (수익성, 5점) ※ (현행과 같음)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20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7점) ○ (현행과 같음)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6점) ○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라. (현행과 같음)
3. 시민의 이용 편의성 (18점) 가. 관내 지점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 (7점) ○ 시민의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관내 영업점 수, 관내 무인점포 및 관내 ATM 설치 수를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 ※ (생 략)
 - 나.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능력 (6점)
 - (생 략)
 - 다. 지방세입금 납부 편의 증진 방안 (7점)
 - (생 략)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5점)
-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 관리능력 (5점)
 - (생 략)
 -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7점)
 - (생 략)
 -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7점)
 - (생 략)
 - 라. 수납시스템(OCR센터, ETAX 등) 구축운영능력 및 계획 (6점)
 - (생 략)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9점)
-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5점)
 - (생 략)
 - 나. 시와의 협력사업계획 (4점)
 - 출연금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 ※ II-3, 4의 지방세에는 세외수입을 포함

<신 설>

- ※ (현행과 같음)
 - 나.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능력 (5점)
 - (현행과 같음)
 - 다. 지방세입금 납부 편의 증진 방안 (6점)
 - (현행과 같음)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8점)
-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 관리능력 (6점)
 - (현행과 같음)
 -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8점)
 - (현행과 같음)
 -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8점)
 - (현행과 같음)
 - 라. (현행과 같음)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7점)
- 가. (현행과 같음)
-
- 나. 시와의 협력사업계획 (2점)
 - 출연금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 ※ <삭제>

6. 그 밖에 사항 (2점)

- 가. 녹색금융 이행실적 (2점)
 - 금융기관이 탈석탄 선언을 하였는지와 그 이행 실적, 국제 녹색금융 이니셔티브 가입 여부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 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 II-3, 4의 지방세에는 세외수입을 포함